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30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2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2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2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

(14시5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김승원 소위원장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김은혜, 백혜련, 유상범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된 직무유기·직권남용·은닉·은폐 의혹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행위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관련 사건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자 6명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

원 7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기우종 법원행정처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지 않았으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안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 그리고 대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하반기 법사위 첫 전체 합의한 법률안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위원님 그리고 진보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투표, 그 참정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하는 중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그전부터 선관위에 이의가 제기되고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구조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투표용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종료 시간 전까지 제대로 투표 못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대변하는 소중한 힘인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또 박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은 혹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박형수 간사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수고하셨으므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진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이성윤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보고사항】

○의안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7.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20259)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6년도 2분기 이용·전용·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출

(2026. 7. 29. 헌법재판소 제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2026. 7. 29. 헌법재판소 제출)

임시회의록